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해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94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 조해진 · 허은아 · 지성호

이철규 · 김선교 · 서일준

윤창현 · 김상훈 · 전주혜

박형수 · 태영호 · 김 웅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·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.8%('19년 기준)에 불과하고, 곡물자급률도 21.7%('19년 기준)로 OECD 국가 중 최하위.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.

한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·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,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%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.

이에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 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 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(안 제68조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했 개 정 아 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) ① -----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-----2023년 12월 31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 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

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 인(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법 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 한다)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(현물출자와 관련 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

②
<u>2023년 12월 31일</u>

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「농업・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・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

및 초지는 제외한다)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.

는 부동산(제2항에 따른 농지

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 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 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 제하고,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

③
<u>2023년 12월 31일</u>
 1
 ④ <u>2023년 12월 31일</u>
.

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	
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	
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른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